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9 - 55
----------	---------

제출년월일 : 2019. 4. 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## 1. 개정이유

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명확히 규정하고 협의체 업무 전담직원 채용을 명시하여 마포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과 사용 용어 규정(안 제1조~제2조)
- 나. 각 협의체의 기능, 구성 및 운영 내용 변경(안 제3조~제7조)
- 다. 협의체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유급직원 채용과 업무 명시  
(안 제13조)
- 라. 협의체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명시(안 제14조~16조)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
- 나.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 첨부
- 다. 합 의: 해당사항 없음
- 라. 규제여부: 해당사항 없음
- 마. 기타사항
  - 1) 입법예고: 2019. 3. 28. ~ 4. 17. (제출된 의견 없음)
  - 2)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자율평가 결과: 원안 동의

- 3) 가정복지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: 개선사항 없음
- 4)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·규칙심의회 심의·의결(2019.4.23.)
- 5)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

##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 제4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, 실무협의체, 실무분과 및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지역사회보장협의체”란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1조제1항에 따라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,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·법인·단체·시설과 연계·협력을 위하여 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의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.
2. “실무협의체”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.
3. “실무분과”란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(이하 “법 시행규칙”이라 한다) 제6조제5항에 따라 실무협의체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.
4. “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”란 법 제41조제7항에 따라 동 단위의 사회보장 관련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주민 네트워크 조직을 말한다.

**제3조(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)**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(이하 “대표협의체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자문한다.

1.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, 시행, 변경, 평가에 관한 사항
2.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
3. 사회보장 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
4.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
5.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
6.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
7.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**제4조(대표협의체의 구성)**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, 당연직 위원은 지역사회보장 업무 담당국장·보건소장·실무협의체 위원장 각 1명과 동 복지협의체 위원장 중 1명을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, 위촉직 위원은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한다.

1.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2.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·법인·단체 시설의 대표자
3. 「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」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
4. 법 제41조제7항에 따른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(공동위원장이 있는 경우에는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된 공동위원장을 말한다)
5.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

③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각 1명을 공동위원장

으로 선출하되, 공무원인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④ 대표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둔다.

**제5조(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)** ①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, 구청과 보건소의 사회보장 및 보건의료 관련 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.

③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④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 별로 조사·연구 또는 연계·협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.

⑤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검토·협의한다.

1. 협의체에서 심의하는 안전에 관한 사항
2. 지역사회보장 관련 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·협력에 관한 사항
3. 협의체로부터 검토를 지시받은 사항
4. 그 밖에 실무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

**제6조(실무분과 구성 및 운영)** ①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실무분과의 위원은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이 지역사회보장 관련 분야 종사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

③ 실무분과의 분과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실무협의체의 위원이 된다.

④ 법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른 실무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.

1. 실무협의체에서 검토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
2. 지역사회보장 관련 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·협력에 관한 사항
3. 실무협의체로부터 검토를 지시받은 사항
4. 그 밖에 실무분과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

**제7조(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)** 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(이하 “동 협의체”라 한다)는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다.

② 동 협의체는 동장과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추천하고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.

③ 동 협의체 위원은 동별로 위원장을 포함하여 각 10명 이상으로 한다.

④ 동 협의체의 위원장은 동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된 사람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한다.

⑤ 동 협의체의 회의에 관하여는 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

⑥ 구청장은 동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**제8조(위원명단 공개)** 구청장 또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대표협의체 또는 실무협의체의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 경우 그 위원의 명단을 서울특별시 마포구보와 서울특별시 마포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.

**제9조(위원장 등의 직무)** ① 대표협의체, 실무협의체 및 동 협의체(이하 “각 협의체”라 한다)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, 실무분과장은 해당 실무

분과의 업무를 총괄한다.

-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③ 실무분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- 제10조(위원의 임기)** ① 각 협의체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위촉직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-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
  - ③ 위촉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**제11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** ① 각 협의체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협의체의 심의·의결에서 제척된다.

1.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(당사자가 법인·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
2.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
3.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, 연구, 용역(하도급을 포함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,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
4.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·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

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·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,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.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.

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·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.

**제12조(위원의 해촉)** 구청장 또는 협의체의 위원장은 각 협의체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2.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
3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4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
5.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

**제13조(직원)** ① 구청장은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, 실무분과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1명의 직원을 둘 수 있으며,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직원의 보수를 지원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법 제41조제2항에 관한 사항
2. 행정실무 및 예산, 회계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

**제14조(회의)**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, 구청장 또는 각 협의체 재적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.

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·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경우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④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**제15조(회의록)** 각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·작성하여야 한다.

1.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
2.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
3. 심의 및 의결사항
4. 심의 및 의결결과
5.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

**제16조(의결사항의 처리)** 구청장은 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**제17조(의견의 청취)** 각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(이하“관계인 등”이라 한다)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,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그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.

**제18조(공청회 등 개최)** 협의체의 위원장은 회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.

**제19조(수당 등 지원)**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**제20조(운영세칙)** ① 협의체, 실무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협의체의 위원장이 정한다.

② 동 협의체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고, 필요시 동 실정에 맞게 동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<붙임>

##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비용추계서

### I. 비용추계 요약

1. 비용발생 요인 : 제13조 직원 채용에 따른 인건비

2. 비용추계의 전제

① 지원 금액 : 18,000,000원

※ 2019년 7월~12월 임금

② 지원대상 : 기간제근로자 1명

※ 2019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 기준(과장 1호봉)

※ 산출 내역

- 기본급: 2,189,400×6개월=13,136,400원

- 4대 보험료: 230,000원×6=1,380,000원

- 명절휴가비: 1,824,500원×1회=1,824,500원

- 시간외 근무수당 등 : 276,500원×6개월=1,659,000원

3. 비용추계의 결과

(단위 : 천원)

구분		연도				합계
		2019	2020	2021	2022	
세출	인건비	18,000	37,000	38,000	39,000	132,000
□	총 비용(a-b)	18,000	37,000	38,000	39,000	132,000

4. 재원조달 방안 : 시비 50%, 구비 50%

(단위 : 천원)

구분		연도				합계
		2019	2020	2021	2022	
세입	시비	9,000	18,500	19,000	19,500	66,000
	구비	9,000	18,500	19,000	19,500	66,000
합계		18,000	37,000	38,000	39,000	132,000

5. 덧붙이는 의견 : 구체적인 세출은 차후 변경될 수 있음

6. 작성자

작성자 이름	복지교육국 복지행정과 이정은
연 락 처	02-3153-8832